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발달장애란 해당 연령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나이의 정상 발달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서울 대학병원 의학정보 정리 인용).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하나의 장애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하기 위한 용어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발달장애 경계선이라는 용어 사용은 국내 연구에서 주로 ‘장애위험’이라는 용어로 쓰이며 장애와 관련된 ‘경계선’이란 용어 사용은 교육계에서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는 용어표현으로 사용한다. 장애위험은 현재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의 실패를 초래하거나 장애를 일으킬 상황(이상희, 이연구, 2016)이며, 경계선 지능은 지능 지수가 웨슬러 지능검사 기준 71~79로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나무위키 정리 인용). 이러한 용어 사용 의미를 유추하여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정의한다면 해당 연령의 기대되는 정상적인 발달 범위를 벗어나 초기 발달이 지체되면 이후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Hooper & Umansky, 2009) 영유아로

특수교육의 범위에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장애등급 등 어떤 진단명으로 진단되지 않고 장애 영유아와 정상 영유아의 경계에 있는 ‘애매모호함’을 지닌 영유아 즉, 특수보육대상의 경계선에 있으며, 전체적인 발달영역(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또는 특정한 두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수준에 이르지 못한 영유아로 정의한다.

2.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의뢰 전 중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장애아동복지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 2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1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법 제6조 3호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고, 동법 제12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하였다. 동법 동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은 아동발견(child-find)으로 유아특수교육·장애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장애 선별 이전에 대중의 인식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선별과정을 촉진하는 사정 단계

(이미션 외, 2005) 이므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 발견은 장애 선별 이전의 장애 위험 영유아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의뢰 전 중재는 일반학급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명확한 진단을 위해 의뢰하기 전에 특수교사의 협력을 받아 대상 영유아에게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박현옥, 이정은, 2007). 의뢰 전 중재는 ‘협력’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일반학급의 영유아와 교사를 도와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의뢰 전 중재는 개별 영유아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과잉진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국립특수교육원, 2009),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환경, 교육방법 등 전문가의 자문 및 도움으로 장애가 아님에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오판되는 빈도를 감소시키고,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교사에게는 동료교사나 전문가들과 함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므로 발달장애 및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소현, 200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의뢰 전 중재 실행 규정이 없다.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조기 중재의 내용은 있으나 이러한 특수교육 서비스 또는 장애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판정 및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진단과 판별절차 및 해당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갖는 제한점으로 장애의 유무를 조기 발견하고 장애가 발견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할 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법 규정에서 빠져있다. 의뢰 전 중재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교사와 발달장애 경계선상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위해 특수교육의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개념으로 특수교육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이유로 영유아교육 영역에서 의뢰 전 중재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현장에서는 장애 진단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고 행동 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경우도 장애 영유아수가 3인 미만일 경우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특수보육이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육교사에 의한 일반적 보육과정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방치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혜진, 안영주, 2016). 일반 보육교사의 경우 장애아 지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업무과중과 영유아의 개인차로 인한 보육과정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이정림 외, 2012). 일반학급에서 한 명의 장애 영유아 또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있다면 해당 영유아가 보이는 행동문제는 다른 일반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반 영유아의 부정적 피드백으로 장애 또는 발달장애 경계선상 영유아의 부정적 경험이 가중되어 학급 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지도하는 담임교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및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교사들이 의뢰 전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의뢰 전 중재 경험이 거의 없고, 의뢰 전 중재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한 자원의 협력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게 보고되었다(김보영, 2015; 정대영, 2016). 그러나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조기 중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는 높게 보고 되었으며(유은경, 2018),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가 효과적임을 보고하는 연구들이(강혜원 외 2018; 강혜원 외, 2015; 구향남, 이병인, 2015; 권소영 외, 2018; 박정숙 외: 2013; 이지효 외, 201; 우정화, 이병인, 2018) 많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내에서 장애 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중재방법을 실행한 후 각각 장애 위험 영유아의 행동문제가 감소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며(강혜원 외, 2015, 강혜원 2018; 권소영 외 2018),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한다(우정화, 이병인, 2018). 그리고 교실 전체의 사회적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강혜원 외, 2015; 박정숙 외, 2013)와 장애위험 영유아의 활동참여 행동이 많아지는 등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지속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권소영외 2018; 구향남, 이병인, 2015). 그리고 이지효 외(2018)의 연구는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 개입이 해당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부터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내 조기 중재가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고, 해당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여 발달정상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함께 생활하는 일반유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의뢰 전 중재 및 교육지원이라 할 수 있는 특수보육전문가 순회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약보육 지원 서비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장애 취약보육 지원 사업을 개괄하고 그 중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약보육 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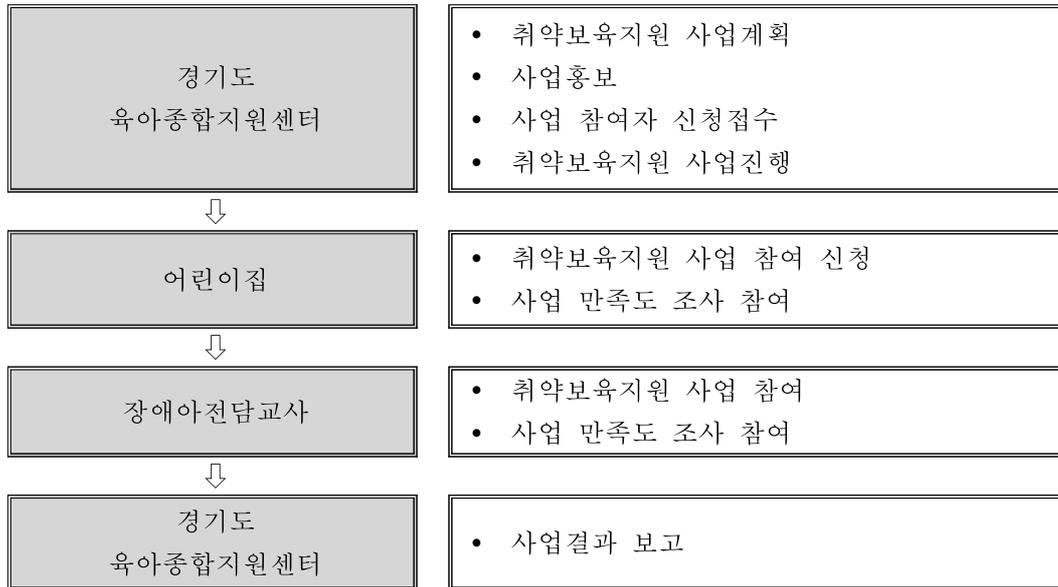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으로 장애통합교직원 교육, 장애통합교직원 자조모임,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통합교직원 교육은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 보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전담교사 교육을 통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전문적 특수보육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08명의 장애아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장애통합교직원 자조모임은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들이 자조모임을 통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및 피드백을 통하여 자발적 장학의 기회를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오산지역 127명의 장애아전담교사가 자조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장애아전담교사 교육 및 사례발표, 평가회를 실시하였다.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은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위험 영유아를 보육하는 일반 어린이집에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을 통하여 장애아통합 보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해당 영유아와 교사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의뢰 전 중재 사업을 실시하였다. 27개소의 어린이집으로 특수보육전문가가 272회 현장 방문하여 장애 영유아를 관찰·평가하고, 상담지원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취약보육지원 서비스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취약보육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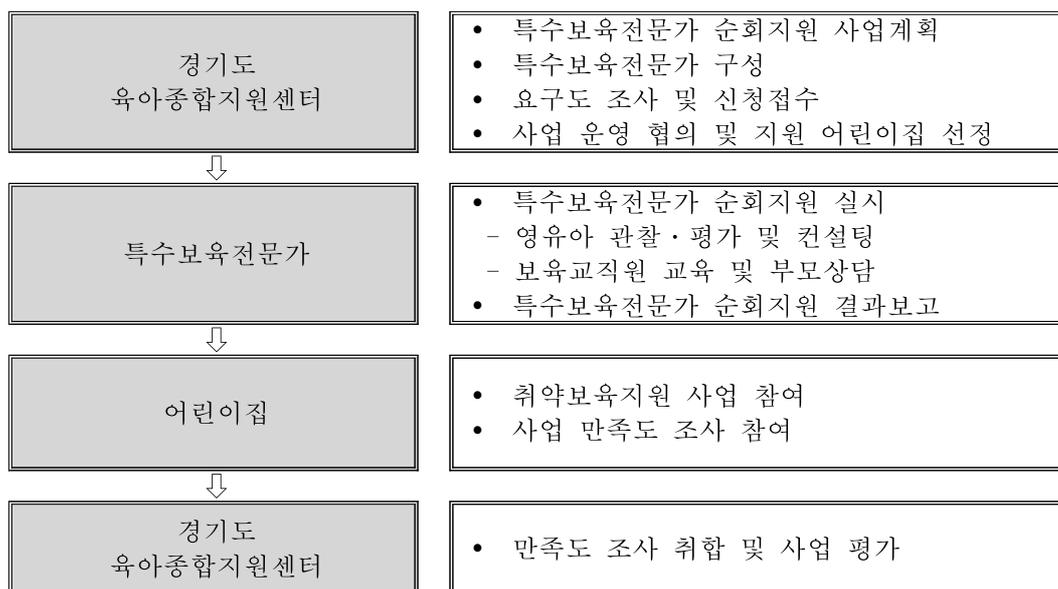
2)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이하 ‘장애아전담교사’) 순회지원 사업을 하였다. 당 사업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가 장애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어린이집에 2주에 1회 방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 또는 장애 위험 영유아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장애아전담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일반 영유아와 함께 장애 영유아 또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돕고,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일반교사에게는 장애 영유아를 지도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장애 영유아에게는 영유아 개별적 수준에 맞는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파견나간 장애아전담교사는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장애아전담교사는 인근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사로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를 받아 2주에 1회 파견을 나가는 것이라 지원을 받는 해당 영유아에게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개별지원이 어려웠고, 지원 받는 교사에게는 지원과 지원 사이의 기간이 길어 제대로 된 지도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장애 영유아 및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수능력을 향상하기 어려웠다. 단지 장애아전담교사의 방문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유아를 잠시 맡아주고, 교사의 일을 덜어주는 보조 인력이 다녀가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여기에 더하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를 전담하여 보육하던 장애아전담교사가 자리를 비우고 타 어린이집으로 지원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의 사업 계획 의도에 어긋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이에 그 동안의 장애아전담교사 순회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는 보다 수준 높은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의 추진체계와 운영과정 및 내용은 다음 <그림 II-2> <표 II-1>과 같다.



<그림 II-2>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 추진체계

<표 II-1>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운영과정 및 내용

운영과정	내용	
순회지원 일정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 지원일정 협의 - 어린이집 1개소 당 10회 방문/ 협의 후 회기조정가능 	
순회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순회지원 실시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관찰·평가 결과 보육교직원 교육 및 부모상담 -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컨설팅 • 순회지원 일정 	
	소요시간	내용
	10:00~10:10 (10분)	인사
	10:10~11:30 (80분)	영유아 관찰 및 평가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상담·교육
	11:30~12:00 (30분)	마무리
순회지원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지원 일정 협의 또는 순회지원 마무리 • 만족도 조사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을 위한 특수보육전문가 구성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으며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 5명을 모집하였다. 전문가 5인은 각각 4개소~5개소의 어린이집을 담당하여 어린이집 1개소 당 10회기를 지원하였다. 특수보육전문가는 파견나간 어린이집의 영유아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교사의 지도양상을 관찰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놀이 및 중재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사가 갖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상담하고, 행동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여 교사에게 시범을 보이는 등 영유아 지도를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그리고 부모교육과 상담이 가능한 경우 개별 또는 집단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부 전문가의 경우 발달검사, 지능검사, 사회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모, 원장, 교사와 공유하기도 하였다.

특수보육전문가의 지원 사례 중 원장과 보육교사의 관찰 결과 행동문제와 비전형적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를 부모에게 알렸음에도 부모는 상황에 대한 외면과 부정

으로 해당 영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특수보육전문가의 부모 상담 및 지도로 해당 영유아의 상태에 집중하고 조기 중재를 시도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은 어린이집 내의 의견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부모의 변화와 해당 영유아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특수보육전문가를 신뢰하고 의지하였다.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종료 이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순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대한 만족도, 특수보육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지원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전 수요조사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어린이집이 매우 많았으나 행정적, 재정적 제약으로 제한된 수의 어린이집에만 지원 혜택이 제공된 점이 사업운영에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이다. 이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원을 위해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의 강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보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경기도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실태